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2043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수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7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함께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들이고, 피고 B는 약 10년 전 축구모임에서 원고를 알게 되어 의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2018. 1.경 원고에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D 가구 사업에서 월 1억 6천만 원의 매출이 나고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명품가구인 프랑스 E 가구를 직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 놓아서 원가의 3.5배에서 4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업으로 가구 판매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8. 3. 1.경 피고들과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순자산에 상응한 금액을 원고가 추가로 투입하고, 향후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 자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피고들에게 2018. 2. 3.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동업자금으로 합계 169,77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위 동업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 매장의 차임을 몇 달째 연체하고 있는 사실, 소상공인 창업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 사실 등 불리한 재정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사업체는 피고들이 장담한 바와 같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출이나 수익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동업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121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9. 12. 19. 피고들이 수령한 동업자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대구지방법원 2019노5133호로 항소하였으나,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에 후발적으로 동참하는 형태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기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매출 및 수익 현황 등은 동업 여부와 함께 지분비율, 출자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체 운영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 및 수익 현황과 매장의 연체차임, 금융기관 대출, 미지급 물품대금 등 각종 채무에 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체의 동업약정 당시의 경영 상태와 채무 규모,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할 때, 만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들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동업자금 명목으로 169,775,000원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동업자금 169,7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69,775,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7.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3.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